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1회 임시회

검토 보고서

2023. 4. 3.(월)

| 검 토 안 건 | 발 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| 김영미 의원 외 8명 |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
증진을 위한 조례안”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김영미 의원 외 8명
- 제안일 : 2023. 3. 22.
- 회부일 : 2023. 3. 24. (의안번호 : 23- 27)

2. 제안이유

-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지원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
- 아동복지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'23. 3. 17 ~ '23. 3. 22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안건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, 조사 및 연구를
 -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단체 등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 - 아동의 삶의 질과 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보장은 매우 중요함.
 - 통계청이 발표한 <2022 아동·청소년 삶의 질>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아동·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%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국 중 27위임.
1위는 만족도가 90%인 네덜란드이고 비교 대상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2017년 6.99점에서 2020년 6.80점으로 감소함.
 - 아동기에 겪는 학습과 놀이의 심각한 불균형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,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음.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,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.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것임.
- 아동의 놀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권리이고,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, 신체적·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안 제5조제1항

제5조(조사 및 연구)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조례안 제7조제1항

제7조(단체 등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2.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
3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송우림 |
| 연락처 | 02-3153-8968 |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아동복지법

[시행 2022. 7. 1.] [법률 제17784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6. 3. 22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

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**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**

[발효일 1991. 12. 20.]

제31조 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.